

분담금의 면제·경감에 따른 감면사업자 공고

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(분담금의 면제·경감 및 가산금)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(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-4호)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'16년도 방송사업자 분담금의 감면자·감면금액 및 감면사유를 공개합니다.

2016년 12월 19일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

1. 감면자·감면금액 및 감면사유

구분	감면자	감면금액 (단위:원)	감면사유
지상파 방송사업자	(재)광주영어방송재단	248,635	○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 1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감면
	(주)와이티엔디엠비	2,953,395	
	유원미디어(주)	1,283,055	
	소계	4,485,085	
	오비에스경인티브이(주)	557,130,667	○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 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면
	(주)와이티엔라디오	6,847,951	
	(재)불교방송	20,905,592	
	(재)평화방송	19,619,833	
	(재)기독교방송	183,062,031	
	한국디엠비(주)	1,811,788	
소계		789,377,862	
합계		793,862,947	
종합편성 • 보도전문	(주)제이티비씨	508,999,402	○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 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면
	(주)채널에이	68,985,751	
	(주)매일방송	27,504,766	
	(주)조선방송	61,549,184	
	(주)연합뉴스티브이	89,592,612	
	소계	756,631,715	
총합계		1,550,494,662	

2. 근거법령

○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(분담금의 면제·경감 및 가산금)

제13조(분담금의 면제·경감 및 가산금)

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분담금의 면제·경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<개정 2013.10.30., 2015.6.22.>

1. 다음 각 목의 사업자 중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사업자로서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자: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
가.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
나.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
2.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(자본잉여금을 포함한다. 이하 제3호에서 같다) 총액 이상인 사업자: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
3.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 총액 미만인 사업자: 해당 연도의 분담금을 결손금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비율만큼 경감

② 삭제 <2013.10.30.>

③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1.3.29.>

○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(분담금의 면제·경감사유 등의 공개)

: 위원회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·감면금액 및 감면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